건설공사 안전·보건 설계 지침

1. 목 적

이 지침은 건설공사의 계획 및 설계 단계에 발주자, 설계자, 건설사업관리자 (CMr) 및 감리자 등 공사관계자가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·보건 확보를 위한 역할과 업무범위를 체계적으로 정립하여 건설공사에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설계 지침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.

2. 적용범위

이 지침은 국내에서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의 안전·보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주자, 설계자, 건설사업관리자(CMr) 및 감리자 등 공사관계자가 건설공사의 계획 및 설계, 안전관리대책 등을 수립하는 경우에 적용한다.

다만, 이 지침 이외의 사항은 KOSHA GUIDE를 참조하고 이상의 기준 등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법령, 관련 고시, 규정 및 지침 등을 따라야 한다.

3. 용어의 정의

- (1)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 - (가) "건설공사"라 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산업분류중 건설업으로 분류된 건설공사로서 건설산업기본법, 전기공사업법,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에서 정하고 있는 공사를 모두 포함한다.
 - (나) "공사관계자"라 함은 건설공사의 계획에서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근로자의 안전·보건관련 계획수립 및 업무를 수행하는 발주자, 설계자, 건설사업 관리자(CMr), 감리자 등을 말한다.